미디어센터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 센터는 학생차지기구 내의 미디어센터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미디어센터는 본교의 건학 정신을 선양하고 대학 방송 및 언론 매체로서의 기본적 사명을 다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, 교내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보도하며,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론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이바지한다.

제 3 조(소재지) 미디어센터는 동남보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4 조(관계 법규의 준수 및 금지사항) 미디어센터는 신문잡지윤리강령 및 실천요 강, 전파법,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본 대학의 교육 방침에 위배되는 요소를 배제한다.

제 5 조(사업) 미디어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.

- 1. 교내 교육 방송
- 2. 동남학보 발간
- 3. 인터넷 방송
- 4. 콘텐츠 개발

제2장 조 직

제 6 조(조직) ①미디어센터는 국장과 부국장, 방송부, 신문부, 영상부에 약간 명의학생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학생임원은 본 대학 재학생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학생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국장: 미디어센터 대내 외 업무를 대표한다.
- 2. 부국장 : 각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국장 업무를 보조한다.
- 3. 방송부 : 교내 정규방송과 특집방송, 방송문화행사 업무
- 4. 신문부 : 학보발행 업무 외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도움이 되는 정서교양 업무
- 5. 영상부 : 학내 각종 행사 동영상 촬영, 방송문화행사 업무

제 7 조(대표자) 총장은 신문부의 학보발행인이 되고 학생처장은 인쇄, 출판, 방송 및 편성, 콘텐츠제작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
제 8 조(주간교수) 미디어센터는 학생처장이 주간교수가 된다.

제 9 조(주간교수의 의무) 총장의 명을 받아 학보의 편집 및 인쇄, 방송의 편성 및 제작, 그리고 부서의 운영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10조(간사) 미디어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) 미디어센터는 제2조의 목적과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7명이내의 교직원으로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이라 한다)를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

은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생처장이 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2조(위원의 권한과 의무)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미디어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
제13조(의결)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3장 재 정

제14조(예산) 미디어센터의 예산은 학생회비로 한다.

제15조(회계) 예산의 집행 시에는 학생자치회비 사용규칙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